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-58호

「강릉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21일 강 **릉** 시 의 회 의 장

강릉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리대상이 아닌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, 적용범위(안 제1조~제3조)
- 나. 시장의 책무, 시민의 책무(안 제4조~제5조)
- 다. 안전관리계획의 수립, 안전점검, 재난예방조치 사항(안 제7조~제9조)
- 라.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기간 지원요청 사항(안 제10조~제11조)
- 마. 옥외행사의 중단 및 해산 권고 사항 규정(안 제12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/☎033-640-4033)에게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 의견

[보내실 곳]

○ 우 편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

O 이메일: rhdchfhd@korea.kr

O 팩 스: 033-640-4070

붙임 1. 강릉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.

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. 끝.

강릉시 조례 제 호

강릉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강릉시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강릉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"옥외행사"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열리는 행사 중, 공연·축제·체육활동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를 말한다.
 - 2. "안전관리"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 - 3. "공연"이란 음악·무용·연극·연예·국악·곡예 등 예술적 관람 물을 실연(實演)에 의하여 공중(公衆)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.
 - 4. "주최"란 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.
 - 5. "주관"이란 주최 기관이나 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.

- 6. "관계인"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·관리자 또는 점 유자를 말한다.
- 7. "안전관리요원"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중 강릉시(이하 "시" 라 한다)가 주최·주관하거나, 주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가 없는 행사 에 적용한다.
 - 1. 「공연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열리는 500명이상 1,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
 - 2.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 1,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공연 외의 옥외행사. 다만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73조의 9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축제는 제외한다.
- 제4조(시장의 책무) 강릉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제7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옥외행사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예 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5조(시민의 책무) 강릉시민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, 자기가 소유·관리·점유 또는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제6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
- 제7조(안전관리계획 수립 등)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 · 주관하

- 는 사람이나 단체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옥외행사 개최 14일 전까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계획(이하 "안전관리계획"이라 한다) 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 또는 신고해야 한다.
- 1. 시 또는 「강릉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(이하 "출자·출연 기관"이라 한다)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옥외행사
- 2. 시 또는 출자・출연 기관이 후원하는 옥외행사
- 3. 시에서 옥외행사 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·주관하는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.
- 1. 옥외행사의 개요(일시, 장소, 주최·주관, 주요내용, 참가예정 인원 등)
- 2.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· 임무 등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
- 3. 옥외행사 장소 및 관련 시설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
- 4.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
- 5. 비상시 대응요령,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
- 6. 재난 보상 보험 가입 및 시행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주최·주관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없는 옥외행사의 경우, 옥외행사 관련 부서에서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-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⑤ 옥외행사를 주최·주관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시 장에게 변경보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⑥ 시장은 관할 소방서장, 경찰서장 등에게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.
- 제8조(안전점검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위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과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1. 제7조에 따라 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옥외행사
 - 2. 주최·주관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
 - ②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옥외행사를 주최하는 사람이나 단체 또는 관계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점검 사항 은 관할 소방서장,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시장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주최하는 사람이나 단체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9조(재난예방조치 등)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긴급안전점검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면 옥외행사를 주최하는 사람이나 단체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이행하게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수의 사람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이 예견되어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.
- 1. 제2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- 2.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없이 화기(火氣) 사용, 풍등·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
- 3.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중에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한 경우
- 제10조(안전관리요원 배치) 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 지를 위하여 시가 주최·주관하는 옥외행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 수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.
 - 1.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
 - 2.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, 모자, 어깨띠,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
 - 3.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, 임무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
 - 4.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

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게 할 것

- ②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옥외행사에 대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거나 안전관리요원 배 치를 권고할 수 있다.
- 제11조(지원요청)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옥외행사에 질서유지와 교통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12조(중단 및 해산 권고) 시장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주최자에게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수 있다. 다만,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참여자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| □법규명: | | | | |
|-------------|---|-----|--|--|
| ○ 성명(단체명) : | | | | |
| ○ 주 | | 소 : | | |
| ○ 연 | 락 | 처 : | | |

| 제ㆍ개정안 내용 | 의 견 | 비고 |
|----------|-----|----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